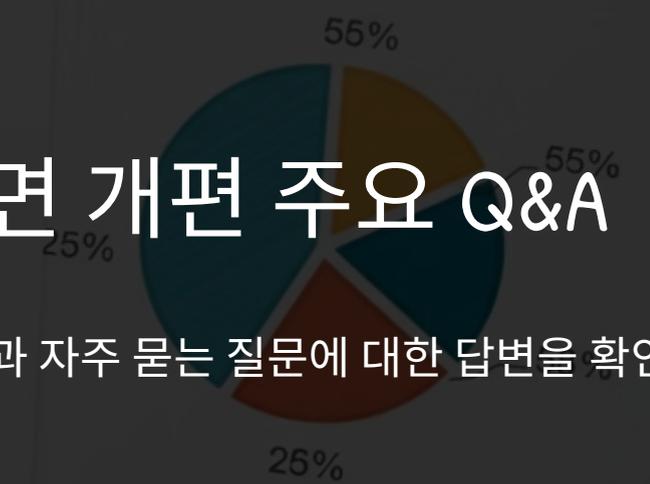


시마으준진 답놀 기사히



답변



2024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Q&A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세요.

간소화서비스 개편 요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 기준 변경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또는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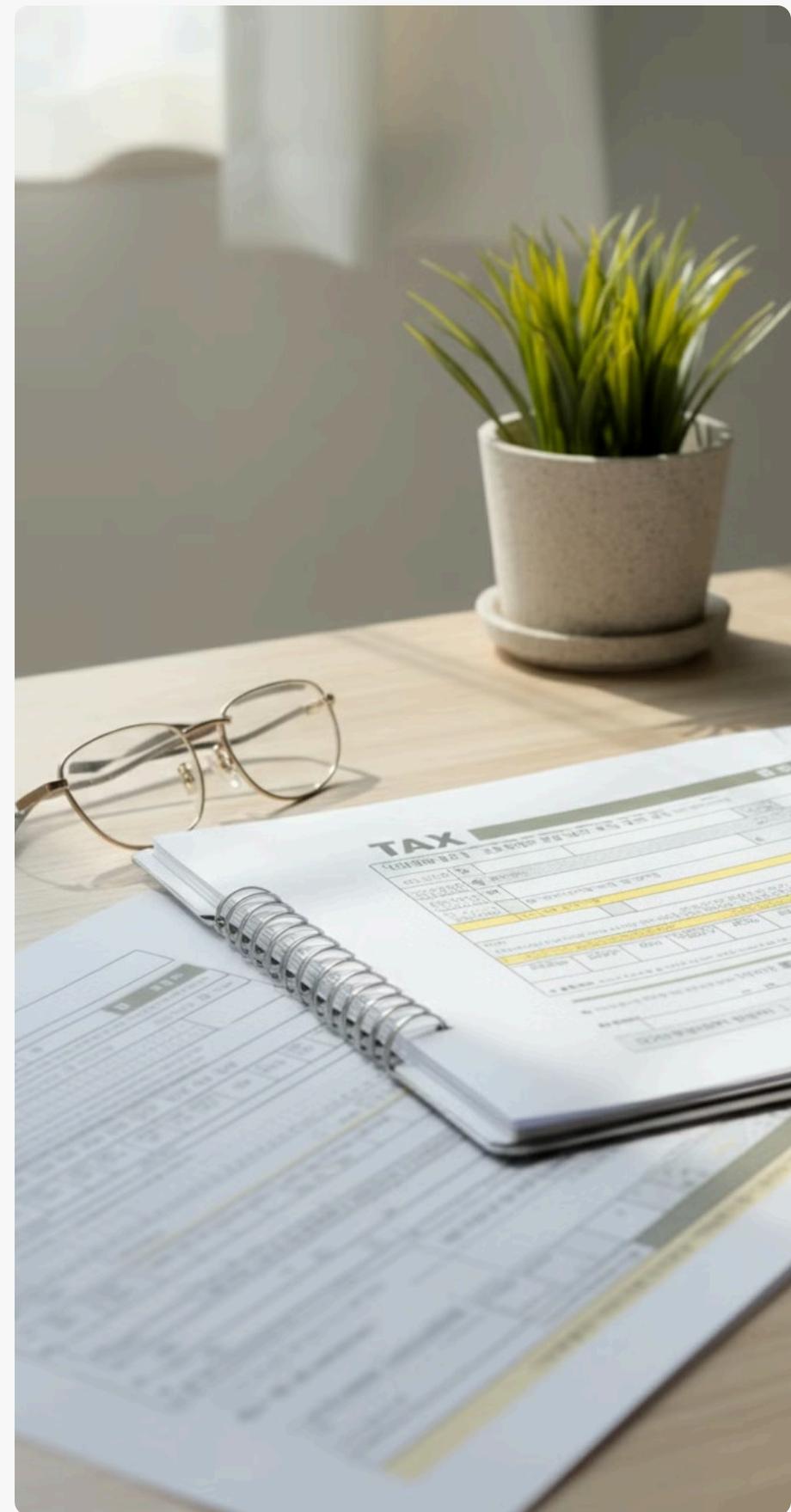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조회 가능하며,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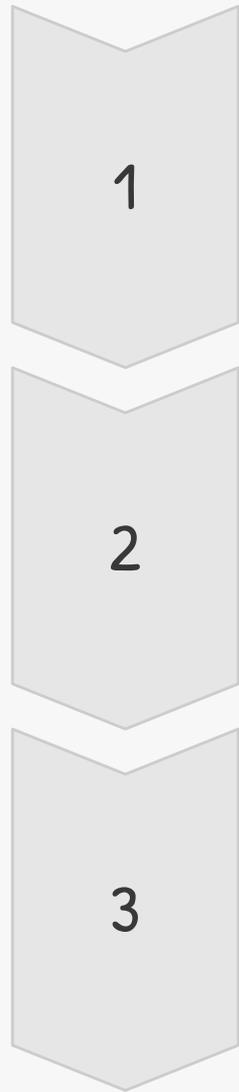


시스템 변경 이유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판정 기준



판정 기간

'24년 상반기(1~6월) 소득만으로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소득기준 초과로 판정됩니다.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 합산이 100만원 초과 시 소득기준 초과입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 방법>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 사업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3 기타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율)

4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봄) * 2이상 물건 양도 시 통산

5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소득금액 산정 관련 Q&A

양도소득금액 판단

부동산·시설물이용권 등 양도 소득 기준이며, 주식은 제외됩니다.

소득금액의 확정 여부

지급명세서 수정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변경될 수 있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산정 기간 연장

현재는 6.30.까지의 소득 기준이며, 향후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소득기준 초과 여부 민원 대응

기본 공제 적용

상반기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연간 소득 지급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조치 방법

NTIS 화면 DE9E에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Y → N"으로 변경 가능하며, 정정 후 간소화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해결 방법

1

부양가족 자료 전달

부양가족이 직접 내려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2

회사 프로그램 업로드

전달받은 PDF 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PDF 통합 불가 시

2개 이상의 PDF 업로드가 불가능한 경우, 부양가족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모바일)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질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자료 제공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자료는 소득기준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A

자료 제공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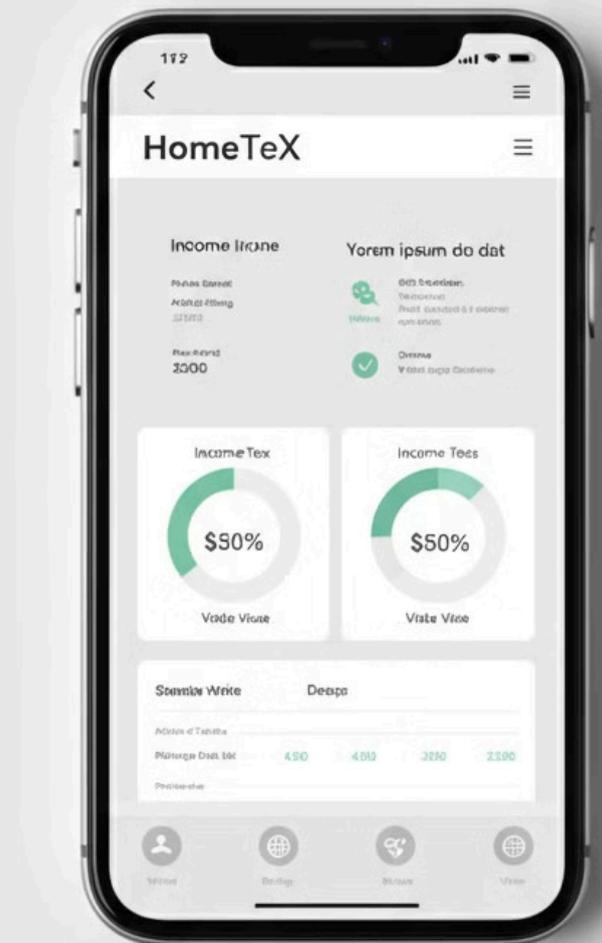
의료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며,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는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발생 내역 확인 방법

홈택스(모바일)에서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발생 내역 조회 경로



간이 근로 · 사업 · 기타소득

홈택스: My홈택스 > 소득자료 · 장려금 · 학자금 > 본인 소득내역 확인



퇴직소득

홈택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양도소득

홈택스: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세목을 "양도소득세"로 조회



특별 사례 및 추가 정보

하반기 취업 자녀 교육비 공제

상반기에 부모가 지출한 자녀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동의 시 자료 제공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자료만 제공됩니다.

기본공제자 설정 오류

근로자가 직접 해당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